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주체97(2008)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38호로 채택

주체99(2010)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4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6월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

주체112(2023)년 5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14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설비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은 설비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의 리 용률을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이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중요한 생산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설비에는 기계와 기구, 장치 같은것이 속한다.
2. 설비관리란 설비를 정확히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제 조직사 업 이 다.
3. 설비의 기술관리란 설비 (련관된 계통 및 요소 포함) 의 기술적특성을 보존하고 기술규정 , 표준조작법대로 관리운영하며 계획적으로 정비, 보수, 개조하는 사업이다.

제 3 조 (설비의 등록과 실사원칙)

설비의 등록과 실사는 설비를 장악기록하며 그 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설비를 제때에 등록하며 계획적으로 실사하도록 한다.

제 4 조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원칙)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를 잘하는것은 설비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 구 이다.

국가는 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전하며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제 5조 (설비관리체계와 질서확립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설비관리체계와 질서를 정연하게 세워 설비의 장악과 인 계, 인수, 정상관리를 바로하며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 조 (대중적설비관리원칙)

설비관리의 주인은 생산자대중이다.

국가는 생산자대 중속에서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설비 관리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생산자대중이 설비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 7조 (설비관리에 대한 연구사업강화, 일군양성)

국가는 설비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 하도록 한다.

제 8 조 (적용대상)

이 법은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해당 감독기관에 적용한다.

설비의 기술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 여있지 않는 사항은 해 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설비의 장악

제 9 조 (설 비 장악의 기본요구)

설비를 장악하는 사업은 설비관리사업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정확히 등록하고 설비의 실사와 평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설비상태를 옳바로 장악하여야 한다.

제 10조 (설비의 국가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상급기관과 거래은행, 해당 감독기관에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제 11조 (설비의 자체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등록대장을 갖추고 설비를 제때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 12조 (설비등록지표에 따르는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등록지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설비등록지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한다.

제 13조 (설비의 현물, 화폐적등록)

설비등록은 현물, 화폐적으로 한다.

현물등록에서는 설비의 명칭과 등록번호, 형식, 규격, 능력, 수량, 생산 또는 설치년월일, 설치장소, 등록근거 같은것을, 화폐적등록에서는 설비의 도매가격과 운반, 설치와 관련된 비용 같은것을 국가제정 및 등록가격으로 기록한다.

제 14조 (설비등록의 근거문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등록할 경우 대상별로 설비관리감독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등록, 배정, 인수문건 같은 근거문건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선물설비, 배려설비, 룬전설비, 배 같은 설비는 설비관리감독기관의 등록승인 문건에 따라 등록하며 인쇄설비, 전파설비 같이 해당 부문이 감독통제하는 설비는 해당 감독기관의 등록 승인문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 15조 (새로 건설한 대상에 설치한 설비의 등록)

새로 건설한 대상에 설치한 설비의 등록은 그것을 넘겨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인계, 인수가 끝난 후에 한다.

설비시운전에서 합격되지 않은 설비는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없다.

제 16조 (수입설비, 자체제작설비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설비와 자체로 제작한 설비를 정해진 기간동안 가동시켜 기술경제적효과성이 담보된 다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7조 (설비의 변경등록과 삭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소속관계 또는 구조 같은것이 변경되었거나 설비가 폐기되었을 경우 제때에 변경등록하거나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 18조 (설비의 인계, 인수정형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관리에 책임있는 일군이 교체되는 경우 인계, 인수를 정확히 하고 그 정형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19조 (설비실사위원회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비실사를 하여야 한다.

설비실사는 설비실사위원회를 조직 하여 진행 한다.

제 20조 (설비실사형태)

설비실사는 분기 실사와 년실사로 나누어 하며 필요에 따라 총실사와 임시실사도 할수 있다.

분기실사는 분기에 1차, 년실사는 년에 1차 정기적으로 한다.

제 21조 (설비실사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실사하는 경우 설비의 수량증감과 상태변화 같은것을 설비등록대장, 고정재산등록대장과 정확히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설비실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 22 조 (설비실사정형의 장악과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실사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설비, 없어진 설비, 사장되어 있는 설비, 리용률이 낮은 설비 같은것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분기실사자료는 해당 상급기관에, 년실사 및 총실사자료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 23조 (설비평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리용정형과 능력, 정밀도, 기술상태, 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을 정확히 장악, 판정하기 위하여 해마다 설비평정을 하여야 한다.

설비평정은 설비평정 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진행한다.

제 3 장 설비의 정상관리

제 24조 (설비의 정상관리 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설비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설비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설비사고를 미리 막기 위

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가동시키며 그 기술상태를 검사하고 불량개소를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설비운전자격)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기술기능을 원만히 갖춘 운전공이 설비를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와 룰전설비 같은것의 운전은 해당한 자격을 받은 운전공만이 한다.

제 26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의 준수)

설비운전공은 설비의 운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 안전규정을 게시하며 정해진데 따라 설비별로 운전일지를 갖추어야 한다.

제 27 조 (로동안전원배 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기능과 책임성이 높은 일군을 로동안전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로동안전원은 설비의 가동상태를 정상적으로 살피며 사고요소가 나타났을 경우 에는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28 조 (설비배 치와 리용률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용도와 능력에 맞게 그것을 배치하고 리용률을 최대한로 높여야 한다.

설비배 치는 기술적조건과 안전조건이 보장되 게 하여 야 한다.

제 29조 (설비경력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경력서를 갖추고 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설비경력서에는 설비평정, 정밀도검사, 기름주기, 구조변경,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 설비리용정형 같은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 30조 (설비의 점검과 정비, 보수, 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계획적으로 보수하며 고장난 설

비를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수는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한다.

제 3 1 조 (공 구 및 예 비 부 속 품 의 확 보)

기관, 기 업 소, 단 체 는 설 비 보 수 에 필 요 한 공 구 와 예 비 부 속 품 을 사 전 에 확 보 하 기 위 한 대 책 을 세 워 야 한 다.

설비보수에는 쓸수 있는 다른 설비의 부속품을 떼내어 리용할수 없다.

제 3 2 조 (설 비 보 수 자 금)

기관, 기 업 소, 단 체 는 설 비 보 수 에 필 요 한 자 금 을 계 획 적 으 로 형 성 하 고 효 과 적 으 로 리 용 하 여 야 한 다.

제 3 3 조 (설 비 보 수 의 질 과 기 일 보 장 및 보 고 서 작 성 제 출)

기관, 기 업 소, 단 체 는 앞 선 보 수 방 법 을 받 아 들 여 설 비 보 수 의 질 을 높 이 며 보 수 기 일 을 지 켜 야 한 다.

보수한 열 및 내압설비, 료전설비 같은 설비는 해당 전문기술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설비보수가 끝나면 설비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제 3 4 조 (설 비 점 검 검 열 의 날 운 영)

기관, 기 업 소, 단 체 는 설 비 점 검 검 열 위 원 회 를 조 직 하 고 매 주 설 비 점 검 검 열 의 날 을 정 상 적 으 로 운 영 하 여 야 한 다.

설비점검검열위원회는 설비점검 검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따라 설비점검 검열을 정확히 진행하고 검열에서 나타난 우, 결함들을 총화평가하며 나타난 결함은 제때에 퇴치 하도록 하 여야 한 다.

제 3 5 조 (설 비 의 개 조, 갱 신)

기관, 기 업 소, 단 체 는 기 술 혁 신 운 동 을 힘 있 게 벌 려 설 비 를 끊임 없이 현대화하고 장비수준 을 개 선 하 여 야 한 다.

설비의 구조를 고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합의한 기술합의문건과 설계도면, 구조 변 경 신 청 문 건 을 대 상 에 따 라 상 급 기 관 또 는 해 당 감 독 기 관 에 내 여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제 3 6조 (설비사고의 심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사고가 생겼을 경우 제때에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설 비 사고는 해 당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사고심의결과는 해당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설비의 조절과 폐기

제 3 7조 (설비의 조절과 폐기의 기본요구)

설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폐기하는것은 설비의 리용률을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설비의 가동정형을 료해하고 사장되 여있는 설비, 리용률이 낮은 설 비 같은것은 용도에 맞게 재배치하며 쓸수 없는것은 제때에 재제작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 3 8조 (설비의 재배치방법)

설비관리감독기관과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재배 치대상을 바로 정 하고 설비를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재배치하여야 한다.

설비의 재배치는 설비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임대, 이관, 예비동원, 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설비를 임대, 이관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 3 9조 (설비의 임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시적으로 리용하지 않는 설비를 1년까지의 기간안에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빌려줄수 있다. 이 경우 중요설비에 대하여서는 상급기관의 승 인을 받으며 설비경력서와 기술관리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설비임대료금은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한 다음 해 당 기관에 등록 하여야 한다.

설비를 빌려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에 정해진 기간이 끝난 즉시 설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 4 0 조 (설비의 이관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으려 할 경우 설비이관, 인수 신청문건을 작성 하여 해 당 상급기 관 또는 설 비 관리감독기 관에 내 야 한다.

설비이관, 인수신청문건에는 설비명, 등록가격, 설비이관, 인수의 목적과 내용 같은것을 밝히고 설비를 넘겨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

제 4 1조 (설비의 이관승인)

설비이관, 인수신청문건을 받은 상급기관과 설비관리감독기관은 그것을 정해진 기일안에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하여 야 한다.

설비이관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비이관, 인수승인문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 2 조 (사장되 여있는 설 비 자료의 제 출)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사장되 여있는 설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상급기관과 설 비관 리감독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3조 (설비의 예비동원)

국가적인 설비의 예비동원은 설비관리감독기관이 한다.

설비관리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상급기관이 재배치하지 않은 설비를 예비 동원하여 필요한 단위에 재배치할수 있다.

제 4 4조 (몰수한 설비의 배정)

몰수한 설비의 배정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설비를 몰수하였을 경우 해당 설비를 몰수문건과 함께 중앙설비관 리 감독기관 또는 내각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 4 5조 (설비의 넘겨주기)

설비의 이관, 예비동원, 배정과 관련한 승인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 기간 안에 설비를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넘겨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 를 넘겨주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하는 문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4 6조 (비법적인 설비교체, 설비파손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넘겨주는 경우 다른 설비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넘겨주는 설비에서는 부속품, 공구, 지구 같은것을 떼낼수 없다.

제4 7조 (비법적인 임대, 이관, 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공민에게 비법적으로 임대, 이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민은 승인되지 않은 설비를 점유, 리용, 처분할수 없다.

제 4 8조 (설비의 재제작)

설비관리감독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장났거나 사장되어 있는 설비가운데서 자체로 수리재생 할수 없는 설비를 전문생산단위 에서 재제작하여 리용하거 나 재 배 치하여야 한다.

제 4 9조 (설비의 폐 기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낡고 리용전망이 없는 설비를 제때에 폐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설비폐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설비폐기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사회안전기관의 경유와 거래은행, 해당 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설비폐기신청문건에는 설비의 기술상태와 폐기리유, 쓸수 있는 부대설비 및 부분품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 5 0 조 (설 비폐 기 신청 에 대 한 승인)

해당 상급기관과 설비관리감독기관은 설비폐기신청문건을 접수한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비, 정해진 가격의 설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1 조 (폐 기설 비의 처 리)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상급기관은 설비의 폐기를 승인한 경우 쓸수 있는 부대설비나 부분품 같은것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되는 설비에서 쓸수 있는 부대설비나 부분품 같은것을 해당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이 정해준대로 회수하여 리용하며 남은 파철과 파유색 금속을 고금속관리기관과 유색 금속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 5 장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5 2 조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중앙 기관,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한다.

제 5 3 조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설 비관 리 사 업 에 대 한 감독통제 는 설 비관리감독기 관과 해 당 감독통제기 관이 한다.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 당 감독통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4조 (민사적 책 임)

이 법을 어겨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 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5 5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1. 설비의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2. 등록되지 않은 설비를 운영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50만원
3. 설비의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00만원
4. 운전일지, 설비경력서 같은 설비관리문건이 없거나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50만원
5. 운전자격이 없는자에게 해당 설비의 운전을 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20만~100 만원
6. 고장난 설비를 제때에 수리하지 않아 3년이상 사장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50 만원
7. 승인없이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8. 넘겨주어야 할 설비를 다른 설비로 바꾸어 넘겨주었거나 넘겨주는 설비에서 부속품, 공 구, 지구 같은것을 떼냈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9. 설비를 비법적으로 임대, 이관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50만원

10. 승인되지 않은 설비를 제작, 점유, 리용, 처분하였을 경우 공민에게 10만원

제 5 6 조 (변상처벌)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여 국가에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제 5 7 조 (중지 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운영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1. 등록되지 않은 설비를 운영하였을 경우
2. 운전자격이 없는자에게 해당 설비의 운전을 시켰을 경우
3. 설비의 기술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요소를 발생시켰을 경우
4. 승인없이 설비의 구조를 변경시켰을 경우
5. 용도와 능력에 맞지 않게 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
6. 비법적으로 구입한 설비를 운영하였을 경우
7. 예비동원, 배정된 설비를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제 5 8조 (몰수처벌)

이 법 제57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결함을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설비를 공민에게 비법적으로 임대, 이관하였거나 공민이 승인되지 않은 설비를 제작, 점유, 리용,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설비의 리용, 처분으로 얻은 자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 5 9조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

설비운전을 바로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엄중성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제 6 0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설비를 정해진대로 등록하지 않아 설비에 대한 장악과 감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등록되지 않은 설비를 운영하였을 경우
3. 설비의 실사와 평정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해당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아 설비에 대한 장악과 감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운전자격이 없는자에게 해당 설비의 운전을 시켰거나 운전자격이 없는자가 해당 설비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5. 설비의 기술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6. 설비경력서에 설비관리정형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설비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7. 설비의 점검과 정비, 보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설비보수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거나 설비보수자금을 류용하여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8. 승인없이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
9. 설비사고정형을 제때에 통지하지 않아 사고의 복구, 조사 같은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설비사고에 대한 심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1.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설비를 임대하였거나 설비임대계약을 맺지 않고 설비를 임대하였거나 설비임대기간을 초과하여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승인없이 설비를 이관, 인수하였을 경우
13. 예비동원, 배정된 설비를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14. 넘겨주어야 할 설비를 다른 설비로 바꾸어 넘겨주었거나 넘겨주는 설비에서 부속품, 공구, 지구 같은것을 떼냈을 경우
15. 설비를 공민에게 비법적으로 임대, 이관하였거나 공민이 승인되지 않은 설비를 제작, 점유, 리용, 처분하였을 경우
16. 승인없이 설비를 폐기하였거나 설비를 사장시켜 국가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17. 쓸수 있는 부대설비, 부분품 같은것을 폐기폐설물로 처리하였을 경우
공구, 지구 같은것을 떼냈을 경우

15. 설비를 공민에게 비법적으로 임대, 이관하였거나 공민이 승인되지 않은 설비를 제작, 점유, 리용, 처분하였을 경우

16. 승인없이 설비를 폐기하였거나 설비를 사장시켜 국가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17. 쓸수 있는 부대설비, 부분품 같은것을 폐기폐설물로 처리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에게 경상해를 입혔거나 2만원분 정도 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 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6 1조 (형사적 책 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책 임을 지운다.